

농지전용협의요청서

사업시행자	성 명 (명 칭)		주민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	
	주 소				
	우편물 수령지 (전화번호 :)				

전용하려는 농지	소 재 지	번지 외 필지			
	구 분	계 (㎡)	답	전	농지개량시설부지
	농업진흥구역				
	농업보호구역				
	농업진흥지역밖				
	계				

사업예정부지 총면적(비농지 포함)		㎡ (농업진흥지역 : ㎡)	
허가·인가 등 신청일자		년 월 일	
사업기간	착공예정일 : 년 월 일		준공예정일 : 년 월 일
사업시행 근거법령 및 사업명			
전용목적			
농지보전 부 담 금 납부방법	[] 일시납부 [] 분할납부 ※ 해당란에 √ 표시		

「농지법」 제34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의 전용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합니다.

년 월 일

협의요청기관장 서명 또는 인

농림축산식품부장관
 시 · 도 지 사 귀하
 시장·군수·자치구구청장

첨부 서류	1. 전용목적,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, 시설물의배치도, 소요자금 조달방안, 시설물관리·운영계획,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」 별표 1의3 및 「물환경보전법 시행령」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.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·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3.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, 폐수의 배출,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.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(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5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지전용협의를 위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지적도·임야도 및 지형도

※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허가가 가능합니다.
 ※ 전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